

한국행정학회 분과연구회 관리 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한국행정학회 운영규정 제3조(분과연구회의 설치와 운영)가 정하는 바에 의해 설치된 분과연구회의 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과연구회의 설립 신청 요건)

분과연구회 설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존 분과연구회의 연구 분야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정회원의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한다.
3. 운영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른 회칙을 갖추어야 하며, 회칙에 의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제3조 (분과연구회의 설립 승인)

제2조의 요건을 구비하여 신청한 분과연구회에 대해서는 신청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활동에 대한 평가 후 운영이사회가 승인한다.

제4조 (분과연구회의 연구활동)

- ① 분과연구회는 회칙에 제시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② 분과연구회의 연구활동은 한국행정학회(이하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분과연구회가 주관한 발표세션과 연구회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학술대회로 정의한다.

제5조 (분과연구회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분과연구회의 연구활동에 대해 학회는 학술대회 세션배정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분과연구회 활동에 대한 평가에 따라 분과연구회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

제6조 (분과연구회의 운영실적 보고)

분과연구회는 운영규정 제3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운영실적을 연 1회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과 결산
2. 임원의 변경
3. 회원현황
4. 주요 연구활동

제7조 (분과연구회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지)

- ① 분과연구회는 1년에 1회 이상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운영실적을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회는 분과연구회가 보고한 전년도 운영실적이 학회 연구활동 지원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 ③ 분과연구회 활동 평가에서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학회 연구활동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분과연구회는 소명절차를 거친 후 운영이사회 의결로 자격을 상실한다.

④ 학회장은 분과연구회의 자격 상실과 관련된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분과연구회 자격의 회복)

자격이 상실된 분과연구회가 그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과연구회 신설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 (기타 사항의 결정)

분과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1조

본 관리지침은 운영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